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15
----------	-----

2025. 4. 30.(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변종오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4월 22일

-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변종오 의원)

가. 제안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의 장소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영업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관련 시설 등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안 제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 등을 규정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준수사항 (안 제4조)
- 영업신고 표시 (안 제5조)
-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안 제6조)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정법주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최근 소규모 창업 및 이동형 상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관련 영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
- 그러나 충청북도 내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운영과 관련한 영업장소 지정 기준, 관리 방안, 공정한 배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행정 혼선이나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운영 실태와 수요에 맞춰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나. 조례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상위법의 취지와 부합하며, 상위법의 위임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자치입법이 가능한 사항임.

- 도지사의 책무, 관계기관 협조, 영업장소 지정 절차 및 관리 등 충청북도 관할권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규율 가능한 조례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 제정 권한에 부합하며 법적 타당성이 확보됨.
- 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4조는 영업자의 영업신고 표시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6조는 영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7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8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등 협조요청에 관하여 규정함.
- 그밖에 조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5. 4. 15. ~ '25. 4. 21.)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본 조례안은 용어 정의, 지정 기준, 지정절차, 사후관리, 인센티브 등 음식판매자동차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서술됨.
- 특히, 제4조(영업장소 지정 대상)와 제5조(지정기준)는 향후 영업장소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민원 예방과 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4. 검토의견

-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음식판매자동차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유희공간의 효율적 활용, 지역 상권과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번호	제915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1일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변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5
----------	-----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발 의 자 : 변종오, 이태훈, 노금식,
김호경, 박용규, 임영은,
황영호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의 장소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영업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관련 시설 등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영업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불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 바이오식품의약품국 식의약안전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營業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해당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

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가.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시설 및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해당 시설 및 장소에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
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
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
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립, 군립 공원: 「자연공원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해당 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
다)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안전 등에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고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②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영업신고 표시) 영업자는 본인, 영업장소, 영업신고번호, 영업소 명칭 등이 작성된 영업신고 표시사항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제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업자가 제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영업지원)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협조요청)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관기관, 공공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식품위생법」

○ 제37조(영업의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별 표15의2] 제10호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 (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1. 유원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영업장(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이 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나. 유원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지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이 호에서 "관광지등"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가 아닌 자가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관광지등의 토지 등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호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민간체육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증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해당 직장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민간체육시설업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자나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체결한 체육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수탁관리자와 체결한 도시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하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가. 「하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에 관한 하천의 점용허가(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를 받은 자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6.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7.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졸음쉼터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8.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
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공용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9.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0.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
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제11조제4항 관련)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사유

- 본 제정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의안의 내용에 따른 직접적인 사업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이에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